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재공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I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대 상 자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 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대상
 -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와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 (강원도)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청년수당 대상자와 동일인
 - 나. 제한업종 사업자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4.1.(수) ~ 4.29.(수)
 - 신청장소 :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대상자결정 : 취약계층 지원대상자와 중복 확인 후 결정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5월 이내)

① 신청장소 확인

- 대표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강원도 이어야 함

<예시 >

(예시 1) 대표자 주소는 강원도 A시에 있으나 사업장이 타 광역지자체(서울시 등)인 경우
⇒ 신청불가

(예시 2) 사업장은 강원도 A시에 있으나 대표자 주소는 타 광역지자체(서울시 등)인 경우
⇒ 신청불가

-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지 시·군이 다를 경우 대표자 주소지에서 신청

<예시 >

- 강원도 A시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 주소는 강원도 B시인 경우 ⇒ B시에서 신청

-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재지 읍·면·동에서 법인대표자가 신청
-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② 사업장 확인

- 사업장 기준(①+② 모두 충족 해야 함)
 - ① '20.2.29.이전 도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한 사업장
 - ②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 유지
 - 신청일 현재 휴업은 가능하나 폐업신고 완료한 사업장은 신청불가

③ 거주지 및 신청인 확인

- '20.2.29.이전 도내 주소지 이전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 대리인 신청 : 본인 위임장 지참하여 신청(위임장 필요)
- 공동사업자(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 : 사업자 중 1인만 신청가능
 - 신청 사업자 외 공동사업자는 신청불가(신청포기확인서 필요)
- 복수사업자(1인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④ 제한업종 확인

- 제한업종(붙임)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제한업종에 없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신청가능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

- 지원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야 함
 -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 신청서에 기재하는 상시근로자는 대표(임원)등이 제외 된 근로자수

(참고)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 연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기준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 불가

7] 취약계층 중복 확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은 신청불가
- 강원도 지원 대상 취약계층 당사자와 동일인은 신청불가

<정부 및 도 취약계층 지원금 중복 신청 확인>

지원기관	취약계층 구분	확인사항	신청여부
정부 (2개분야)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왼쪽 취약계층 지원대상자와 <u>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u>	불가
강원도 (6개분야)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실업수당 수급자 - 경력단절여성구직활동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	왼쪽 취약계층 지원금 수령자와 <u>동일한 소상공인</u>	불가
		왼쪽 취약계층 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u>소상공인</u>	가능

III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중복 확인 완료 후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

※ 지급 된 지원금으로 강원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협조

▶ 강원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3.18.~5.31.) 안내

⇒ 지급받으신 40만원을 가까운 농·축협에서 상품권으로 구매시(상품권 40만원 + 현금 4만원)

①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본 또는 사본, 사진파일도 가능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확인서류 제출 생략

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업종의 경우만 상시근로자수가
5~9인인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 이용

< 참고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여부 >

구 분	상시근로자수		
	1 ~ 4인	5 ~ 9인	1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미제출	<u>확인서류 제출</u>	지원 불가
그 밖의 업종	미제출	지원불가	

⑥ 연매출액 확인서류('19.1.1.~12.31.기간 중 창업한 사업자만 제출)

- 간이·일반과세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18.12.31.이전 창업한 사업자와 '20.1.1.~2.29.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연매출액
확인서류 제출 생략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서식3>

-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⑧ 생활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서식4>

- 준비물 : 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시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신청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경제진흥과(033-249-3223/3200),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표준산업분류	업종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급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창업일	18.12.31까지 ☐ '19.1.1.~12.31. ☐ '20.1.1.~'20.2.29. ☐		
대표자 주민등록지			
사업장 주소			
대표자 계좌 (법인 계좌)	(은행명) (계좌)		
휴대폰	() -	상시근로자수 (직원)	명
업태/종목		연간 매출액	백만원

상기와 같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

1. '20.2.29.(토)이전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2.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 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와 중복지원 불가
 4.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정보	- 사업자 기본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식별번호) - 2019년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8년 수입금액
수집 목적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결정통지 -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수립 및 연구 수행 등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5년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원금 대상 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동의자 성명 :

(서명/인)

[서식3] 위임장 서식(대리인 신청 시)

위 임 장	
수 임 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 2020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감 / 서명) 주소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용)

(수 입 인)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대표 수입인으로 위임하며, 아래 공동사업자는 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본 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아 래 -

신청포기 공동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준비물 : 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